#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23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이인영·김의겸·김한규

박상혁 • 박성준 • 박용진

이수진 • 인재근 • 조오섭

최종윤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떠안고 있음.

이는 노무비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서면을 다시 발급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 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등 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 이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하도급대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 3.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품목 및 가격
- 4. 목적물등에 소요되는 노무비
- 5.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 전의 제5항) 중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을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

- 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⑤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한 하도급대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1. 목적물등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 2.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조정·지급된 경우
  - ⑥ 제2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 원자재의 가격 기준 등 서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⑨ 원사업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조제9항"을 "제3조제1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생 략)	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u>하도급대</u>	② <u>다음 각</u>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호의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u> 사항을 적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u>&lt;신 설&gt;</u>	<u>1. 위탁의 내용</u>
<u>&lt;신 설&gt;</u>	2. 하도급대금의 금액, 지급 방
	법 및 지급기일
<u>&lt;신 설&gt;</u>	3.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품목 및 가격
<u>&lt;신 설&gt;</u>	4. 목적물등에 소요되는 노무비
<u>&lt;신 설&gt;</u>	5.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u>&lt;신 설&gt;</u>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

- ⑤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공 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한 하도급대 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 다시 발급하여야 한 다.
- 1. 목적물등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 2.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 의 적용을 받는 노무비가 최 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조정·지급된 경우
- ⑥ 제2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 원자재의 기준 등 서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⑦</u>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 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 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u>8</u>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u>항을 석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u>
한다)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면
<u> </u>
<u>.</u>
<u>⑧</u> <u>제7항</u>
 ⑨ 제7항
<u> </u>
<u> </u>
<u>.</u>
· ⑩ 제7항 <u>제8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 ⑦ (생 략)

-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생략)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 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 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조 ~ ⑧ (생 략)

·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개정 및 사용) ①
권고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0항제11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u>⑨</u>·<u>⑩</u> (생 략)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 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 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

⑨ 원사업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항
에 따른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
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u>다.</u>
<u>⑩</u> ・ <u>⑪</u>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①

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 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 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 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 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 자로 본다.

#### 1. • 2. (생략)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략)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 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 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 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 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 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 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 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

]11=]
<u>제11항</u>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제10항</u> <u>제1</u>
<u>1항</u>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 일"로 본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 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 -----제13조제12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 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 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제13조제12항---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 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

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 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 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 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 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 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기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시정3		<u></u>		
 · <u>제1</u>	<u>1항</u>			
 ② (처	체기	շ <b>ኒ</b> ዕ	-)	
③ (현 의3(과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 3.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조) ① (생 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 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 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 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 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

1. (현행과 같음)
2. <u>제3조제11항</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① (혀해라 간으)
조) ① (현행과 같음) ②
2
2
2
2
2
2
2
2
2

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	3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여	1]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	]
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인	<u> </u>
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이	1]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	ユ 1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	<u>}</u>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4
야 한다.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 2. ~ 4. (생 략)
  - ②・③ (생 략)

제30조(벌칙) ①
1
<u>제11항</u>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